KiRi Weekly

2015.2.16 제321호

이슈

보험회사의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안 비교

포커스

2014년 보험산업 회고(Ⅳ): 상품

글로벌 이슈

미국 CI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

2014년 중국 보험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

금융시장 주요지표

KiRi 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

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,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(여의도동 35-4) 8층 보험연구원 (문의 : 변철성 수석담당역 / 02-3775-9115)

KiRi Weekly 2015.2.16
이슈

보험회사의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안 비교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, 전용식 연구위원

요약

- 최근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자금이체 기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-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'보험회사의 업무에 자금이체 업무를 추가'하는 것이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'자금이체 기능이 있는 별도의 기관을 자회사 설립 또는 계열사로 편입'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름.
  -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보험업법 상에 겸영업무, 자금이체용 자금, 자금이체용 자금의 관리와 관련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반면, 인터넷 전문은행은 타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것임.

- 두 방식 모두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에 있어서는 시스템 상 차이가 존재할 것임.
  -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외부에 위탁해야 하는 반면,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체가 예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없음.

- 자금이체 기능을 통한 수익은 고객의 주 거래계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, 비용은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식에 따라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.
  - 고객 계좌를 유치하더라도 주 거래계좌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현재 은행에 납부하고 있는 이체수수료조차 절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.
  - 금융결제원 가입비는 자산이나 자본의 규모가 고려될 것으로 보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.

-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기존 고객 활용 면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며,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매몰비용과 사업의 확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.
  - 특히, 산업자본 소유 보험회사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출자 및 의결권 비율 제한과 관련한 규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1. 검토배경

- 최근 금융산업 혁신 논의와 관련해서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(이하 참여 방식)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(이하 설립 방식) 등 자금이체 기능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음.

- 본고는 보험산업의 참여 방식 및 설립 방식에 따라 각각 ① 법 개정 부담, ② 시스템 구성, ③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의하고 회사 특성별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.

  - 법 개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비교하고자 함.
  - 시스템 구성과 관련해서는 ① 금융결제원 가입, ②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 ③ 중앙은행과의 정산 관련 시스템 구성 등에서 존재하는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함.
  - 상기 논의에 근거하여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두 가지 방식에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, 이러한 차이가 회사의 형태별 비즈니스 모델 선택 시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함.

- 참여 방식은 2009년 금융투자업의 유형으로, 설립 방식은 일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자금이체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.

  - 금융투자업은 ① 서민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 직접 참여하고, ②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외부 위탁하며, ③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과는 간접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.
    - 보험산업은 은행이 아니며, 예금수취기관도 아니고, 서민금융기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.
  - 은행은 예금수취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고 중앙은행과도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.
    -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부여될 설립 요건이나 업무 범위 등에 있어서는 불투명한 측면이 많아 구체적인 논의에는 한계가 있음.

2. 법 개정 부담

-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'보험회사의 업무에 자금이체 업무를 추가'하는 것이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'자금이체 기능이 있는 별도의 기관을 자회사 설립 또는 계열사로 편입'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름.

- 참여 방식은 기본적으로 예금수취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 자금이체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체 기능뿐 아니라 자금이체용 유동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임.
  - 보험업법 제11조(보험회사의 겸영업무)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(겸영업무의 범위)에 계약자를 위하여 어떠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할지에 대해 규정하여야 함.
  - 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체를 수행할 유동성에 대해서 별도로 예탁할 것을 자통법 제74조(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)와 유사한 형태로 규정해야 할 것임.
  - 자금이체를 수행할 유동성을 보험산업 내의 유관기관이 관리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자통법 제323조의 21~제335조의 증권금융회사 관련 규정 중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.

- 설립 방식은 타 관련법에서 규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회사와 관련해서는 소유-지배구조 규정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.
  - 현재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확실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, 기본적인 인가요건은 일반은행과 동일함.
    - 미국의 경우 통화감독청(Office of Currency Comptroller)이 2001년 1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, 여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련 감독방향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.
    - 일본의 경우 2000년 8월 확정된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.
  -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은산분리 규정이 검토되어야 하나, 금융자본으로 분류되는 일부 증권회사와 증권지주회사, 그리고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은산분리와 무관할 수 있음.

- 보험업법 개정 부담을 통해서 본 비교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법 개정 부담도 적을 것으로 판단됨.

-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정 완화 없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보험회사들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
3. 자금이체 시스템 유형

-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전술한 개념 및 법적 차이 때문에 ① 결제정보 송 · 수신 및 청산(금융결제원 가입), ② 지급결제용 유동성 관리(예탁기관 유무), ③ 결제자금 차액 정산(중앙은행과의 정산)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임.

가. 금융결제원 가입

- 참여 방식과 설립 방식 모두 금융결제원에는 직접 가입해야 하고 회사가 개별적으로 지급결제와 관련한 IT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지급결제 기관으로서 중앙은행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검사를 받아야 함.

나.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

- 참여 방식의 경우 보험회사 자체가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슈가 될 것임.
  - 참여 방식의 경우 보험 유관기관 중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어 신규 설립해야 할 수도 있음.[1)]
    - 보험산업의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산업 외부의 금융기관(ex 은행, 증권금융회사 등)에 예탁할 경우에는 별도 금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을 것임.
    - 보험회사 중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해당 은행이 유동성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.
  - 설립 방식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가 예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고유자산으로 관리하며, 따라서 별도의 유동성 관리 기관이 필요 없음.

1) 보험회사는 예금수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된 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, 유동성 관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산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함.

다. 중앙은행과의 정산

- 중앙은행과의 결제자금 정산은 은행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방식의 경우에는 대행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과 정산을 하는 반면, 인터넷 전문은행은 직접 정산할 것으로 판단됨.
  - 금융투자업의 증권금융회사와 같은 유동성 관리기관도 중앙은행과의 직접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한 대행은행을 경유하고 있음.
  - 인터넷 전문은행의 직접 정산 여부는 설립 요건 등과 함께 유동적인 측면이 있음.

〈그림 1〉 참여 방식의 소액결제 흐름도(금융투자업 유형일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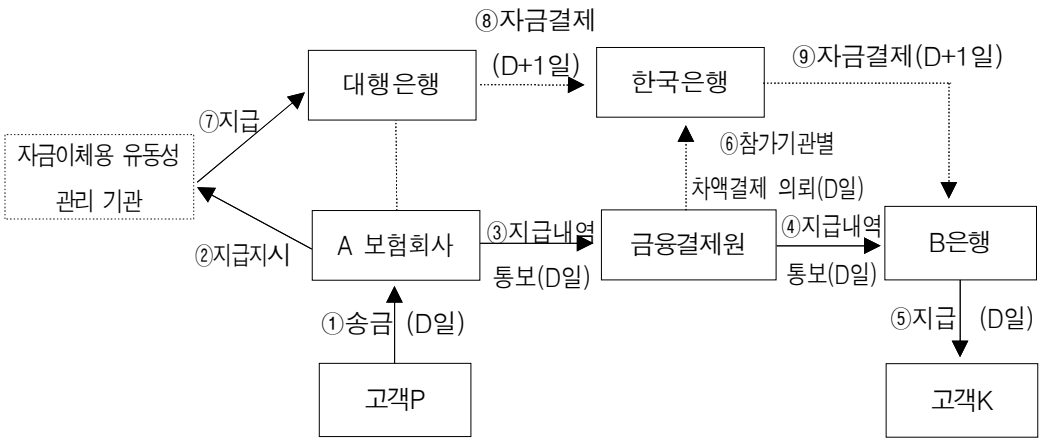

주: 대행은행이 자금이체용 유동성을 관리하는 체제인 경우, 자금이체용 유동성 관리 기관과 대행은행을 통합한 형태로 흐름도를 수정해야 함.

〈그림 2〉 설립 방식의 소액결제 흐름도(은행의 유형일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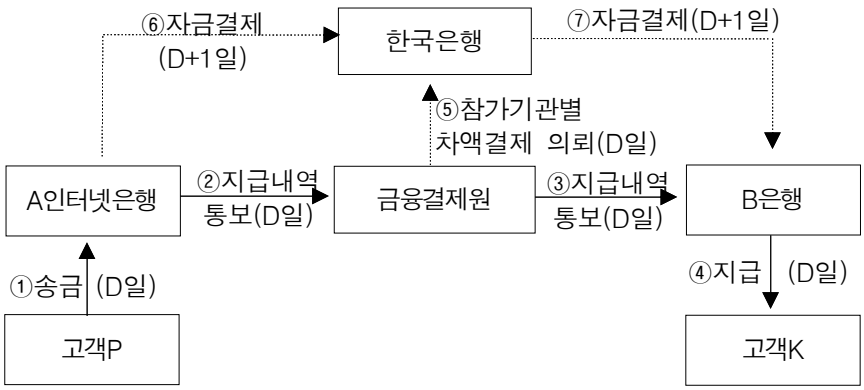

4. 비즈니스 모델 선택

■ 자금이체 기능에 따른 수익은 고객의 주거래 계좌 유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, 비용은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식, 즉 참여 방식인지 설립 방식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임.

가. 기대 수익

■ 지급결제나 자금이체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의 기대 수익은 ① 보험회사의 지급수수료 절감, ② 수수료 수입, ③ 고객 니즈 확대(다양한 고객 유치 수익)에 따른 수익원 다양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.

- 보험회사의 지급수수료는 유치한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될 경우에만 사실상 절감될 것임.
  - 고객의 계좌를 유치했다고 하여도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 이체가 이루어질 경우 은행간 수수료, 고객 수수료, 중개수수료 중에서 고객수수료만 절감될 수 있어 거의 효과가 미미함.[2)]

〈표 1〉 이체 수수료 부담 변화

구분	현행	자금이체 기능 확보 후	
		타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	유치된 계좌로부터 입금
은행간 수수료	○	○	
고객 수수료	○		
중개수수료 및 전송료	○	○	

- 수수료 수입은 유치된 계좌에서 타금융권(신용카드 대금 등) 또는 기업(신문, 정수기 등) 등으로 이체 서비스가 발생하면 은행간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게 될 것임.
- 유치된 계좌를 활용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다른 보험상품이나 신탁 등의 서비스로 재유치할 수 있으며 One-Stop 종합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임.

■ 자금이체 기능을 통한 수익 창출은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고객의 주거래 계좌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.

2) 보험산업이 은행에 지급하는 이체수수료는 연간 대략 1,600~1,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.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절감은 유치된 계좌로부터 보험료 이체까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임.

- 참여 방식의 경우 보험회사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접점에서 계좌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  - 다만, 계좌를 유치한다고 하여도 고객이 주거래 계좌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수익 창출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해야 할 것임.
  - 고령화에 따라 연금 지급계좌가 현재의 급여이체 계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증가는 기대하기는 어려움.
- 설립 방식의 경우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반면, 은행으로서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  - 반면, 산업자본에 대한 출자 비율과 의결권 비율 제한이 관련 보험회사의 경영 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.
  - 금융 전업 보험회사의 경우 출자비율과 의결권 비율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경영 구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  - 2016년부터 계좌이동제(Account Switching)[3]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은행들의 계좌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틈새시장 공략 여지가 있을 것임.
  - 가계와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대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익원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.

나. 예상 비용

지급결제 관련 비용은 크게 ① 금융결제원 가입비와 ② IT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가 참여 방식과 설립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.

- 금융결제원 가입비 산출 방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자산이나 자본 규모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참여 방식이 설립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매몰비용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[4]
- IT 시스템 구축 비용은 두 방식 모두 금융결제원과 별도의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---

3)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한 B은행에 자동이체 연결을 신청할 경우, 기존의 A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해지 건까지 알아서 처리하는 제도로 EU와 영국, 호주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과 소액결제 통합을 위해 도입한 바 있음.
4) 공식 통계는 없으나 개별 가입한 금융투자업이 총 4,000억 원 가량의 가입비를, 서민금융기관(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)들이 각각 200억 원 가량의 가입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■ 지급결제 관련 비용은 참여 방식이 설립 방식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나 설립 방식의 경우 자본 요건과 규제비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.

-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모가 500억 원(지방은행 수준)에서 1,000억 원(시중은행 수준)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고, 기본적으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와 상관없이 건전성, 유동성 규제 등을 받아야 함.
- 또한, 계좌유치 비용인 경쟁력 있는 예금금리와 수수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 유치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.

다. 자금이체 기능 확보 방식 선택

■ 참여 방식이나 설립 방식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주거래 계좌 확보 능력에 따라 자금이체 기능 방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.

- 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의 경우 계열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논의의 대상이 아님.
- 금융전업 보험회사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.
  - 인터넷 전문은행은 매몰비용과 사업 확장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에 대한 마케팅 여건만 극복된다면 우월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.
  - 참여 방식의 경우 기존 고객을 바탕으로 주거래 계좌를 단시간에 충분히 유치할 수 없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해 사업성이 갈수록 낮아질 수 있음.
- 산업자본 소유 보험회사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출자비율과 의결권 비율 제한 등이 경영활동의 제약요인이 될 경우 참여 방식을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임.
  - 이 경우 금융결제원에의 가입비, 유동성 관리 기관의 선택 등에 있어서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임.
- 아직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사업 모델 간의 유·불리는 유동적일 수 있을 것임. KiRi